開發制限區域의 制度改善에 관한 建議案

議案 番號 219

發議日字 : 1993. 1
發 議 者 : 宋錫贊議員外 5

1. 主文

大田直轄市 全體 開發制限區域(그린벨트)의 60%가 넘는 실제 綠地인 林野를 除外한 雜種地, 農地, 垈地 등 非綠地中 旣存 垈地 등

은 開發制限區域 再調整이 될수 있도록 制度改善案을 建設部長官 및 市長等에 建議하고자 함.

2. 提出理由

가. 開發制限區域(그린벨트) 指定은 都市의 無秩序한 확산을 防止하고 健全한 都市發展과 都市民의 보다 쾌적한 生活環境維持를 위하여 크나큰 寄與를 하였으나

나. 開發制限區域 指定으로 쾌적한 環境造成을 누리는 수혜자인 都市民을 最小限의 부담도 하지 않고 開發制限區域內 住民만 희생을 감수하여야 함은 矛盾으로

다. 住民生活 不便解消 次元이 아닌 모든 國民과 平等하게 살權利를 갖도록 하고, 憲法에 明示된 人間의 基本權, 生存權의 次元에서 開發制限區域이 再調整 될 수 있도록 制度改善을 要求하는 것임.

開發制限區域의 制度改善에 관한 建議案

1. 改善方案

가. 區域의 再調整

全體 開發制限區域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순수녹지대인 林野는 그대로 區域保存하고, 非綠地인 나머지(林野를 除外한)

약 40%중 旣存의 垈地나 旣存部落, 住宅은 區域指定을 解除하여 住居地域 수준으로 適應하고, 農耕地나 雜種地는 一般綠地(保存綠地, 自然綠地, 生産綠地)로 轉換

나. 首都圈과 地方의 差等規制

首都圈(서울)을 除外한 地方都市 특히 大田市의 경우는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때문에 都市의 健全한 發展과 土地의 合理的

利用開發 保全을 기할 수 없을뿐 아니라 開發制限區域의 指定目的의 하나인 “都市의 비대방지” 適用對象이 될 수 없으므로 마땅히 首都圈(서울)과 地方都市의 規制는 差等適用되어야 함.

2. 改善方案의 當爲性

가. 權威主義와 독재시대의 유산인 開發制限區域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의 굴레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21世紀를 내다보는 거

시적 眼目으로 무엇이 진정한 市民의 利益에 附合되는가 하는 발상의 일대전환이 새로운 時代를 여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어진 使命이라는 접근방식으로 問題解決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됨.

나. 형평과 社會正義에 입각한 공평부담의 원리에 비추어 보나 대다수 國民이 現實的으로 適用받는 無補償 制限(規定)의 실제

수준에 비추어보나 위의 改善方案(住居地域)으로, 一般綠地로 轉換)이 無補償制限의 限界이며, 그 이상 수준의 制限(規定)은 憲法上(憲法 第23條 3項) 정당한 補償對象이기 때문임.

이는 "規制의 平等化 原則"에 비추어 區域內 住民들이 平等한 國民으로서 당연히 保護받아야 할 最低限의 基本的 生存權 보장의 限界이기도 하기 때문임.

開發制限區域의 制度 改善에 관한 建議案

審 査 報 告 書

1993. 2.

産 業 建 設 委 員 會

開發制限區域의 制度改善에 관한 建議案

審 査 報 告

1993年 2月 20日
産業建設委員會

1. 審 査 經 過

가. 提案日字 : 1993. 1. 28

나. 提 出 者 : 宋 錫 贊 議員外 5人

다. 回附日字 : 1993. 2. 1.

라. 上程日字 : 第18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4次 産業建設委員會 (1993. 2. 17) 上程, 質疑, 審査議決

2. 提案說明 要旨

(提案說明者 : 宋 錫 贊 議員)

가. 主 文

大田直轄市 全體 開發制限區域의 60%를 차지하는 실제 綠地인 林野를 除外한 雜種地, 農地, 垈地등의 非綠地 地域中 垈地등은 開發制限區域에서 除外토록 再調整하는 制度改善案을 建設部長官 및 大田直轄市長에게 建議하고자 함.

나. 提 案 理 由

○ 開發制限區域 指定은 都市의 無秩序한 擴散을 防止하고 健全한 都市開發과 市民의 보다 快適한 生活 環境 維持를 위하여 크게 寄與하였으나

ㅇ 開發制限區域 指定으로 快適한 環境을 享有하는 다같은 受惠인 都市民은 最小限의 負擔도 없이 開發制限 區域內 住民만 犧牲을 甘受하여야 하는 矛盾으로

ㅇ 住民生活 不便 解消次元만이 아닌 모든 國民과 平等하게 살 權利를 갖도록 하고, 憲法에 保障된 人間의 基本權, 生存權의 次元에서 開發制限區域을 再調整토록 制度改善을 要求하는 것임.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鄭今弼)

ㅇ 開發制限區域의 合理的인 再調整 建議案은 1991. 9. 17. 第4回 臨時會時 請願으로 回附되어 建設部長官 및 內務部長官에게 建議하였으나 現實的으로 調整이 不可하다는 回信을 받은바 있음.

ㅇ 大田圈 開發制限區域은 1974. 5. 9. 指定 告示 以來, 持續的으로 區域內 住民들의 私有 財産權 行使를 制限하여 많은 不便을 招來하게 된바, 住民들의 欲求膨脹에 의한 行政 需要 急增으로 그 동안 部分的으로 開發制限區域內의 行爲制限을 緩和해 왔음.

ㅇ 그러나, 政府次元의 行爲制限 緩和에도 不拘하고 民主化趨勢에 便乘하여 集團民願 發生등 開發制限區域 管理에 어려움이 加重되고 있어 現實的으로 問題點이 持續的으로 擡頭되고 있으며, 住民들이 많은 犧牲을 堪當해 온바,

ㅇ 開發制限區域의 合理的인 調整은 諸般事項을 考慮해 볼 때 妥當性이 認定되나, 政府 次元의 確固한 意志없이는 調整이 不可能한 事案으로 判斷되므로 建設部長官 및 大田直轄市長에게 建議함은 可할 것으로 思料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o 大統領選擧公約 事項에도 開發制限區域 規制緩和 內容이 있는데 既存 自然部落등에 대한 規制緩和 方案 推進事項은	o 中央에 建議하고자 不合理한 地域 및 問題點을 把握 檢討中에 있음
o 開發制限區域, 大淸湖 特別保護區域, 施設綠地등에 대하여 包括的으로 建議함은 어떤지	o 意見에 同感함
o 制限區域이 많은데 2000年代 新都市開發에 影響이 없는지	o 西部生活圈 開發計劃으로 2000年代 新都市 開發에 影響이 없음
o 他都市에 비하여 制限區域 面積이 많은 理由는	o 直轄市 昇格前에는 他都市와 比較하여 많지 않았으나(5.4%) 大德郡이 編入되었기 때문임

5. 討 論 要 旨

政府 次元에서도 開發制限區域內 行爲制限 緩和를 檢討하고 있는 時点에서 妥當性이 있는바, 實質的으로 林野를 除外한 地域에 대하여 解除토록 建議하고, 아울러 施設綠地地域을 縮小하도록 建議키로 協議

6. 審 査 結 果

原案대로 可決

7. 小委員會 審査要旨

없　　음

8. 小數의 意見 要旨

없　　음

9. 其他 必要한 事項

없　　음

※ 建議案 別添

開發制限區域 制度 改善 建議案

貴 下

國家發展과 住民福祉 增進을 위하여 行政遂行에 勞苦가 많으십니다.

大田直轄市 議會 第18回 臨時會 (1993. 2. 20)에서 現行 不合理하게 指定 運用되고 있는 開發制限區域을 合理的으로 調整토록 制度改善案을 關係部處에 建議하기로 議決하였습니다.

大田直轄市의 開發制限區域은 市 全體 面積의 59%를 占有하여 他 大都市와 比較해 보면 越等히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동안에 累次에 걸쳐 開發制限區域 指定의 不合理性을 主張하며 解除 또는 緩和 建議를 하는등 區域內 住民들의 便宜圖謀를 위하여 持續的으로 많은 努力을 해왔지만, 刮目할만한 成果가 없었습니다.

民主化의 發展 趨勢에 副應하여 住民들은 過去의 政府方針에 順應만 하는 時代는 지났습니다.

새 韓國 創造 具現을 위한 새 政府 出帆 科程에서도 開發制限區域內 行爲 制限을 緩和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言論에서 報道

되고 있는바, 現實的으로 바람직한 事項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口號에 그치고마는 過去의 事例를 보면 念慮하지 않을 수 없는 實態임

을 勘案 하여 今番 機會에 革新的인 開發制限區域의 合理的인 調整을 期待하는 바입니다.

大田은 開發制限區域 面積의 63%가 林野이므로 純粹 綠地인 林野를 除外한 旣存住宅地域, 農地, 雜種地등에 대하여는 開發制限區域을

解除시켜 國土를 效率的으로 利用하여 都市均衡開發을 促進하고, 20年동안 私有財産權 行使의 制約으로 最低生活마저 營爲하지 못한 區域內住民들의 最大 宿願事業을 解消하여야 할 것입니다.

開發制限區域을 合理的으로 縮小調整한 후 繼續 存置되는 開發制限區域은 土地 效率性 提高를 위한 體育施設, 休養施設등 爲樂施設을 擴

充하여 都市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고 住民 便宜 提供을 위하여 肯定的으로 深度있게 檢討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公園, 施設綠地,

道路計劃線등 都市計劃으로 인하여 長期間 住民 權利行使를 制限하고 있는 部分이 相當히 많으나, 우선 施設綠地에 대하여도 劃期的인 制限緩和方案도 同時에 檢討되어야할 것을 建議합니다.

開發制限區域의 合理的인 調整과 施設綠地의 縮小 緩和등이 現實的으로 切實히 要求되어 새 韓國 創造를 爲한 革新的 次元에서 政策的

인 配慮가 必要한 現實이므로 120萬 大田 市民을 代辯하여 建議하니 積極 受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年 2月 20日

大 田 直 轄 市 議 會